

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0. 1. 16] [법률 제16234호, 2019. 1. 15. 일부개정]

◇ 개정이유

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,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의 준수 사항을 정비하며, 분쟁조정제도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여,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가 공정한 거래 하에서 상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.

◇ 주요내용

- 가.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, 변경신고, 결격사유 및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하여 규정함(제5조의2부터 제5조의8까지 신설).
- 나.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상호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(제7조).
- 다.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와의 계약에 따라 출하 받은 가축의 생산원가, 품질 등을 기준으로 사육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(제7조의2 신설).
- 라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의 파산, 일방적 사업 중단, 농가지급금 지급지연 등에 따른 계약농가의 손해를 계열화사업자로 하여금 배상하게 하기 위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음(제7조의3 신설).
- 마.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시·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, 정보공개서에는 계열화사업자의 일반현황, 계약사육에 관한 조건과 제한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(제9조의2 신설).
- 바.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9명에서 7명으로 하고,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않도록 함(제19조).

※ 자세한 사항(개정문 등)은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://www.law.go.kr>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